

■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관련 목록과 민주이념연구소 · 공안문제연구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2. 소지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 3. 수용자들의 도서여람 허가 여부 결정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 4.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5. 민주이념연구소의 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의 내용)

● 법무부·검찰의 비공개 결정통지서

●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장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준비서면

● 청구취지에 대한 법무부·검찰 답변서

● 정보공개청구서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 공안문제연구소 공개결정 통지서

●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자료(1998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 판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민주이념연구소, 공안문제연구소 등 기사검색 자료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 일자		※ 접수 번호	
청구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김정희 (인권운동사랑방)	주민등록(여권 · 외국인등록)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REDACTED]	
	신 분	<input type="checkbox"/> 일반개인 <input type="checkbox"/> 학생 <input type="checkbox"/> 교수·교사 <input type="checkbox"/> 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 <input type="checkbox"/> 외국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정 보 내 용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2. 소지 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 3.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 결정 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 4. 민주이념연구소(대검찰청 산하 기관)에 대하여 ①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②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③ 연구소에서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④ 연구소 설립 이후 년도별 이적성 감정 건수 ⑤ 연구소의 감정결과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적·문서 등의 목록 ⑥ ⑤의 목록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⑦ ⑥의 재판결과 ⑧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논문·서적 등의 목록 ⑨ 연구소의 연간 예산과 집행 내역 5. 민주이념연구소 외 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 접수증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 용 목 적	<input type="checkbox"/> 학술연구 <input type="checkbox"/> 사업관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정감시 <input type="checkbox"/> 쟁송관련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 개 방 법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목재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0년 4월 27일			
청 구 인 김정희 법무부 장관 귀하			

“기본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법 무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02)503-7055,6 /전송 503-7057
검찰제3과 과장 노환균 / 검사 김용철 / 사무관 성형섭 / 담당자 임채영

문서번호 검삼61000-111

시행일자 2000. 5. 9.

수신 김 정 희 귀하

제목 민원회신

귀하의 정보공개청구내용중 3, 5항에 대하여는 불임과 같이 결정하여
통지하며, 나머지 1, 2, 4항은 우리부의 업무가 아닌 대검찰청 소관업무로
청구서를 대검으로 이첩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불임 :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1부. 끝.

법 무 부 장 관

전결 검찰제3과장 노 환 균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02)503-7055,6 /전송 503-7057
 검찰제3과 과장 노환균 / 검사 김용철 / 서기관 성형섭 / 담당자 임채영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간연장) 결정통지서

문서번호 : 검삼 61000-111

수 신 : 김정희 귀하

※ 접수일자	2000. 4. 27.	※ 접수번호	15
청구정보내용	별 첨		
공개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사유	"		
공개방법	직접공개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우송공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 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0년 5월 9 일

법무부장관

인

□ 불복 방법 및 절차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

문서번호 공기 61112-182

수신 서울시 종로구 명륜 2가 8-29 김정희 귀하

접수일자	2000. 5. 9	접수번호	8
청구정보내용	<별지 1>과 같음		
공개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사유	<별지 2>와 같음		
공개방법	직접공개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우송공개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 <input type="checkbox"/> 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공개일시		공개장소	
수수료(A)	우편요금(B)	수수료감면액(C)	계 (A+B+C)
원	원	원	원

귀하의 정보공개 및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1조 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00년 5월 10일

김찰총



□ 공개청구 정보내용

3.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 결정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
5. 민주이념연구소 외 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 비공개 및 공개 사유

3. 공개여부 : 비공개

○ 비공개 이유

- 상기 목록이 포함된 문서는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1호에 의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임

5. 공개여부 : 공개

- 청구인이 공개요청한 법무부가 이적성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는 존재하지 않음

<별지 1>

□ 청구 정보내용

1.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의 목록
2. 소지 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
4. 민주이념연구소(대검찰청 산하 기관)에 대하여
 - ①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 ②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 ③ 연구소에서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하는 대상의 범위
 - ④ 연구소 설립 이후 년도별 이적성 감정 건수
 - ⑤ 연구소의 감정결과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한 서적·문서 등의 목록
 - ⑥ ⑤의 목록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수
 - ⑦ ⑥의 재판결과
 - ⑧ 연구소가 발행한 간행물·논문·서적 등의 목록
 - ⑨ 연구소의 연간 예산과 집행 내역

<별지 2>

□ 비공개 사유

-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업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할뿐 아니라
-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내용 중
 - 1, 2, 4⑤⑥⑦⑨등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정보의 개념,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4③④⑤⑥⑦등은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에 해당되어
- 청구한 정보내용 전부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모든 메시지를 통합 관리한다! Netffice UMS!

- 웹과 이메일을 통한 팩스 송·수신
- 음성 메일 송·수신
- 이동 중 이메일 내용 청취 (TTS)

URL : www.netffice.com

문의 : ums@haansoft.com

수 신 : 이정희님
 발 신 : 김기중
 날 짜 : 2000년 07월 28일
 총 매 수 : 7
 제 목 : 정보공개청구소장 접수

첨부와 같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Handwritten signature)

김기중

행정

소 장

원 고 김 성 회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의 29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홍국생명빌딩 7층(135-080)

- 피 고
1. 법무부장관
 2. 검찰총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법무부장관의 2000. 5. 9.자 및 피고 검찰총장의 2000. 5. 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1 -

법무법인 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홍국생명빌딩 7층(우:135-080)

변호사 이돈명, 김창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이정희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사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은 물론, 국가보안법에 대한 주무 행정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해 왔습니다.

2. 가. 원고는 2000. 4. 27.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민주이념연구소에 대한 사항 등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해 5. 9. 별지 목록에 기재한 사항중 1, 2, 4항은 대검찰청으로 이첩하고 5항("법무부가 이적성 감정을 의뢰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없다"고 밝혔으나, 3항인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어부결정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에 대해서는 "상기 목록이 포함된 문서는 도서의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외비 문서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거부를 하였습니다.

다. 하지만 법무부가 위 목록을 대외미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표현물의 목록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범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 2 -

법무법인 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홍국생빌딩 7층(우:135-080)

변호사 이돈명, 김창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전선미, 이정희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한다는 점에서 대외비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사안을 이첩받은 검찰총장은 같은 달 10.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임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할뿐 아니라, 별지목록에 기재한 사항중 1, 2, 4항의 ⑤⑥⑦⑨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위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4항의 ③④⑤⑥⑦은 위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유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첩된 사항 전부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마. 하지만 국가기관이 작성, 취득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직무상” 작성, 취득한 것이지, 직무 외에서 작성, 취득한 것이 아니며,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 문건 등의 목록”이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민주이념연구소의 경우에도 민주이념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임무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인데, 이를 두고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침해를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관한 중요한 정책, 연구기관인 것으로 보이는 대검찰청 산하 민주이념연구소의 목적과 주요업무, 감정내역과 결과, 그리고 예산내역 등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

법무법인 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홍국생명빌딩 7층(우:135-080)

변호사 이돈명, 김창국, 최병모, 이석대,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계형, 전선미, 이경희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가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위 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 1. 갑 제2호증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서
- 1. 갑 제3호증 정보미공개결정통지서

기타 입증방법은 소송진행에 따라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위 입증방법
- 1. 소장부분 2통
- 1. 위임장
- 1. 담당변호사지정서
- 1. 납부서

2000. 7.

위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 창 국

변호사 최 병 모

변호사 이 석 태

변호사 김 형 태

변호사 조 용 환

변호사 김 기 중

변호사 도 재 형

변호사 진 선 미

변호사 이 정 희

서울행정법원 귀중

D:\temp\10007281456145.hwp

법무법인 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의 5
홍국생명빌딩 7층(☎:135-080)

변호사 이준명, 김창국, 최병모,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김기중, 도재형, 진선미, 이정희

전화 : 567-2316
팩스 : 568-3439

법무법인 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한국세무회빌딩 7층
 135-931
 전화 567-2316, 팩스 568-3439
 전자우편주소 duksulaw@cyberduksu.co.kr

김정희 님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주소, 전화, 팩스번호가 변경된 경우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통보서

2000/09/30

원고	김정희	피고	법무부장관외1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구23316
재판부	행정2부	법정	212
		다음 기일	2000/11/02
		시간	P3

이번 기일에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우리측

[Redacted content]

상대방측

각 준비서면 진술

[Redacted content]

알리는 말씀

[Redacted content]

첨부서류

상대방 준비서면 각 1부

담당변호사 김기중

사무국장 박찬대

담당직원 박나영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준비서면

사 건 2000구233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정 희
 피 고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을 대외비로 분류한 이유 등

원고가 2000. 4. 27.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수용자들의 도서열람 허가 여부 결정시 참고하게 할 목적으로 법무부가 각 교도소 및 구치소에 내린 이적표현물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함)은, 각 교정시설의 수용자 도서반입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결한 도서들의 목록'을 정리하여 작성한 교화관련 자료로서, 이 사건 정보에는 출판사와 저자(발행처) 뿐만 아니라 관련 피의자의 성명 및 사건번호 등이

2000. **법무부 송무과**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중앙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농후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 피의자의 명단 공개로 인하여 해당 피의자들의 반발이 우려되어 수용자의 교화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대외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각 교도소 및 구치소장이 수용자의 도서반입시 참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수용시설내에서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교정 또는 교화 관련자료로서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조항 제4호 소정의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원고는 소장에서, "법무부가 위 목록을 대외비로 구분관리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표현물의 목록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서 범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외비로 구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위 목록은 공개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겠지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란 "동법 제7조 제1

법무부 송무과

대전시 중앙동 1번지 정부중앙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항, 제3항,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어서(동법 제7조 제5항 참조) 이러한 목적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라 할 것이며, 피고가 "이적표현물의 목록"을 시달한 목적은 각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용자에게 양서를 보급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에는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관련 피의자들의 반발'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수용자 교화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비공개하였던 것입니다.

다. 한편, "법원에서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도서"에 대하여 국가가 그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여부가 의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는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이란 '동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진 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이 취득·소지한 경우에까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판결이 선고된 사안들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의 판결로써 공개된 것이므로, 수용자 교화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교정기관 내부에서 작성·시달한 위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그 저자 및 출판사의 명예 및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소정의


법무부 송무과


대전시 중앙동 1번지 정부중앙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 9. .

피고 법무부장관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허 용 구 

교 감 임 승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귀중

법무부 송무과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중앙청사 (Tel: 503-7041, Fax: 504-1379)

③수입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수입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를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6조 ①위임사무의 종료후 위임인은 수입인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성공보수금 지급한다.

가. 전부 승소한 때(위임인이 원하는 결과가 전부 실현된 때) 각 금 원

나. 일부 승소한 때(위임인이 원하는 결과가 일부 실현된 때)는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내지 가액) 금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금원

②청구의 포기 또는 인나,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 등 종국판결 이외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수입인의 기여도에 따라 성공보수금 따로 산정한다. 다만, 위임인은 결과의 내용과 수입인의 기여도에 대한 수입인의 평가와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제1조 내지 제6조에서 정한 의무를 수입인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위임인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위임인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 수입인은 사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계약해지전 또는 사임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과실없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문서에 의한 통지는 상대방의 최후주소지로 우편발송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①위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임인이 수입인에게 제공한 문서 등의 자료를 비롯한 일체의 관계 서류, 증거 등은 수입인이 보관한다.

②위임인은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 한하여 관계 자료 일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수입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인은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사본을 따로 보관할 수 있고, 위임인이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위임인에게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위임인이 부담한다.

③수입인은 수입업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수입업무 종료후 2년간 보관한다. 위 기간내에 위임인이 인도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위임계약에 관한 분쟁은 변호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서울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0조 이 위임계약서는 원본 2부를 작성하여 위임인과 수입인이 각 1부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

2000년 8월 7일

위 임 인 김 정 희

수 임 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 기 중



준비서면

사 건 2000구23316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정 희
 피 고 검찰총장의 1

위 당사자간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 검찰총장 소송수행자는 다음과 같이 변론
 을 준비합니다.



다 음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및 피고 검찰총장의 거부처분

가. 원고는 2000. 4. 27. 피고 법무부장관에 대하여 소장 첨부 별지목록 기재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바, 피고 법무부장관은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
 보내용 중 1, 2, 4 함에 대하여 대검찰청으로 이첩하였고, 피고 검찰총장은
 2000. 5. 10. 위 정보내용 중 1항(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
 의 목록) 및 2항(소지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제2조
 제1호 소정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되지 않
 는다는 사유로, 4항(민주이념연구소)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는 사유로 각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특히 위 4항 중 ⑤, ⑥, ⑦, ⑨ 항은 동법 제2조 제1호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있는 문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유가 있고, ③, ④, ⑤, ⑥, ⑦ 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도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 검찰총장의 위 거부처분이 위법하고, 위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검찰총장의 위 거부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법한 것입니다.

2.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 문건 등의 목록(1항)

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대상인 "정보"는 당해 공공기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당해 공공기관은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직접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하여 다른 기관이 작성한 문서 등을 취득하여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수행에 참고할 목적으로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이거나 일부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 불과한 기관은 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당해 공공기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나.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문건 등"은 검찰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국가보안법위반죄로 공소제기하여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이적표현물이라고 인정한 서적·문건 등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보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적표현물로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보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법원이라 볼 수 있는 것이지, 피고가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게다가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응하기 위해서는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여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인정된 이적표현물에 대한 자료를 받은 다음 원고가 요구하는 목록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따라서 "법원이 이적표현물이라고 판결한 서적, 문건 등의 목록" 자체는 현존하지 않는 것이므로, 등법 제2항 제1호 소정의 직무상 작성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원고는 위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법원의 판결이 1심판결인지, 2심판결인지, 아니면 대법원 확정판결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느 기간동안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연히 위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청구내용도 불분명합니다).

3. 소지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 가능한 출판물의 목록 (2항)

가. "소지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능한 출판물의 목록"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이적표현물은 아니지만, 검찰이 미리 기존의 출판물을 검토하여 자체적으로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가능한

것으로 분류하여 놓은 출판물의 목록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각급 검찰청은 자체적으로 이적성 논란이 있는 출판물을 검토하거나, 기존의 대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피고가 출판물을 미리 검토하여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가능한 출판물의 목록을 작성하여 놓은 바는 없습니다.

나. 따라서, "소지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가능한 출판물의 목록"도 현존하지 않는 것이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직무상 작성하여 취득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민주이념연구소 (4항)

가.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10조, 제37조 제1항에 근거한 "알권리"를 구체화시킨 권리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만 그 제도적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권리" 및 그에 기초한 "정보공개청구권"도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이 가능하고, 정보공개법 제4조 제3항은 "국가안정보장에 관한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서 동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고, 또한 제7조 제1항 각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민주이념연구소는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대검훈령 제75호

(1997. 1. 10. 시행)에 근거하여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의 체계적 연구와 대공사범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등을 연구하여 검찰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공안부에 설치된 별도의 전문연구기관입니다.

당해 행정기관이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국정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이념연구소의 주요한 활동은 위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아니라, 주로 북한의 대남적화 적략전술 및 대공사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및 자문활동으로서 주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의 현상황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기관의 업무 내용이나 기능 등은 국가안전보장 및 헌정질서의 수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민주이념연구소의 실체에 대하여 국내의 언론보도가 된 것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인 민주이념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한국정부를 비난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을 제2호증의 1, 2).

원고는 민주이념연구소의 실체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공안업무 및 대공업무의 특성상 민주이념연구소의 관련 활동이 공개된다면, 그 기관의 활동범위는 극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존재의 의 조차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원고가 공개청구한 민주이념연구소 관련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는 것임은 명백합니다. 특히 원고가 공개청구한 민주이념연구소 관련 정보 중 ⑤, ⑥, ⑦, ⑨의 정보는 현존하지 않는 정보로서 동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③, ④, ⑤, ⑥, ⑦의 정보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여부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공소제기되어 재판진행 중인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공개될 경우 피고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하는 것입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검찰총장에게 청구한 정보들은 정보공개법 제2조 소정의 "정보"에 포함되지 않거나, 동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것이고, 결국 피고의 위 거부처분은 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입 증 방 법

1. ¹윤 제호증의 1

1997. 12. 1. 자 한겨레신문 기사

2. ²윤 제호증의 2

1998. 2. 7. 자 북한 평양방송 보도기사

2000. 9.

피고 검찰총장 소송수행자

공익법무관 여 철 기



서울행정법원 제2부 귀 중

법무법인 덕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5 풍곡생명빌딩 7층
135-931
전화 567-2316, 팩스 568-3439
전자우편주소 dukuslaw@cyberduksu.co.kr

심태섭

님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주소, 전화, 팩스번호가 변경된 경우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통보서

2000/11/08

원고 김정희

피고 법무부장관외1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구23316

재판부 행정2부 법정 212

다음 기일 2000/11/30 시간 P3

위와 같이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측

상대방측

갑제 4호증(판례에 나타난 이적표현문)

알리는 말씀

첨부서류

담당변호사 김기중
사무국장 박찬대
담당직원 박나영

의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하루소식

2001년 10월 25일 (목)
제 196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공산당선언』, 『브레히트 연구』,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참된 시작』, 『태백산맥』 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관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론, 소설을 비롯, 대학가에 뿌려진 온갖 종류의 유인물, 선거자료집, 성명서까지 이적표현물로 '낙인' 찍혀있다.

목록을 보면 "이 문서들을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한 검찰과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입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만약 입증이 안 된다면, 이 '이적표현물' 목록은 국가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목록'으로 기억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애매하기 짝이 없는 국가보안법 7조(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자의적이고 과도한 적용으로 일관해온 검찰과 법원이 사상적 소수자를 '적'으로 규정해온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돼있다. 이와 관련된 인권운동사랑방 소장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관례상 인정된 이적표현물 목록-도서, 유인물 (법원, 대검)
- 교화상 열독 부적당한 도서목록 (교도소 반입금지 이적표현물)
- 연도별 이적표현물 접수·분석 건수 (민주이념연구소)
-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아티클19)

[최은아]

<목록으로>